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740
------	-----

제안년월일: 2009. 2. 24.
제안자: 교육문화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의 인용부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, 교육감의 권한 중 개방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기타 위임사항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 골자

- 교육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“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”로 수정하여 띠어쓰기를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시킴(안 제1조).
-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”을 추가함(안 제5조제18의2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본문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8의2호의 각 목에 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”을 추가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 표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<신설>		가.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 나..... 다..... 라..... 마..... 바..... 사..... 아..... 자.....
18의3.~33. (생략)	18의3.~33. (현행과 같음)	18의3.~33. (개정안과 같음)
제 6조 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생략) 1.~4. (생략) 5. <u>6급 이하</u>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.~15. (생략)	제 6조 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당해 학교 소속</u> 6.~15. (현행과 같음)	제 6조 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개정안과 같음) 1.~16. (개정안과 같음)

<u><신설></u>	<u>16. 당해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단,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 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)</u>	<u>제7조(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생략)</u> 1.~6. (생략) 7. <u>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</u> <u>(기관장 제외)</u> 8.~13. (생략)	<u>제7조(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현행과 같음)</u> 1.~6. (현행과 같음) 7. <u>당해 직속기관 소속</u> <u>(기관장 제외)</u> 8.~13. (현행과 같음)	<u>제7조(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개정안과 같음)</u> 1.~14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4. 당해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단,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 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)</u>			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6급 이하”를 “당해 지역교육청 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8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8의2. 제17호 각급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사립학교경영자 포함)에 대한 「사립학교법」(이하 이 호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규정에 의한 지도·감독과 다음 각 목의 사항

- 가.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
- 나.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
- 다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
- 라.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취소
- 마. 법 제2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제
- 바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
- 사. 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
- 아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
- 자. 법 제46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

제6조제5호 중 “6급 이하”를 “당해 학교 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6. 당해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단,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)

제7조제7호 “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”를 “당해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(기관장 제외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4. 당해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단,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의거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하급교육청교육장(이하 "교육장")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 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 4. <u>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</u> 5.~18. (생략)</p> <p>18의2. 제17호 각급학교를 유지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</p>	<p>제1조(목적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.....</p> 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당해 지역교육청 소속</u> 5.~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의2. <u>설치·</u> <u>경영하는 학교법인(사립학교경영자 포함)</u>에 대한 「사립학교법」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규정에 의한 지도·감독과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<u>추천권</u> 나.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 <u>소집 승인</u>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	<p><u>다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</u></p> <p><u>라.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승인 취소</u></p> <p><u>마. 법 제2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제</u></p> <p><u>바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</u></p> <p><u>사. 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</u></p> <p><u>아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</u></p> <p><u>자. 법 제46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</u></p>
18의3.~33. (생략)	18의3.~3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생략)	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현행과 같음)
1.~4. (생략) 5. <u>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</u> 6.~15. (생략)	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당해 학교 소속</u> 6.~1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p><u>16. 당해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(단,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)</u></p>
제7조(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생략)	제7조(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(현행과 같음)

1.~6. (생략) 7. <u>6급 이하</u>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8.~13. (생략)	1.~6. (현행과 같음) 7. <u>당해 직속기관 소속</u> <u>(기관장 제외)</u> 8.~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14. <u>당해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</u> <u>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</u> (단,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)